

2025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 부문)

2026. 1

공정거래위원회

순 서

1. 평가 개요	1
2. 평가 결과	3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7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54

1. 평가개요

가. 중점 평가방향

- ☐ '2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른 23개 주요 정책과제의 성과달성도, 계획·시행과정의 적절성, 정책 효과성 등 정책추진 전반에 대해 평가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대상 정책의 심의·확정, 최종 평가 등을 수행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 진행

나. 평가추진 개요

1) 평가추진 체계

- ☐ 자체평가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21명, 내부 당연직 위원 1명(기획조정관) 등 총 22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
 - 평가위원의 전문분야, 직종 등을 고려하여 5개 소위원회*로 편성
 - * 주요정책 분야(4개) : 혁신경쟁촉진, 대기업집단, 상생협력, 소비자 / 행정관리역량 분야(1개)
 - 23개 주요 정책과제별 목적·내용 등을 고려하여 소관 소위원회를 배정
- ☐ 각 소위원회에서 소관 주요 정책과제를 세부지표별로 평정하고, 이를 취합하여 전체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

< 자체평가위원회 평가 절차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부서별 실적보고서 제출, 소위원회별 사전 송부	⇒ 소위원회별 추진실적 점검·평가	⇒ 소위원회별 평가점수 및 의견 취합	⇒ 평가 내용 개별 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	⇒ 전체위원회에서 최종 평가 결과 심의·확정	⇒ 통합 성과에 반영 및 평가 결과 국조실 제출

2) 평가방법

- ☐ 주요정책별 연간 추진실적을 평가지표*에 따라 정량·정성 평가

* '25년도 자체평가 추진계획 수립 시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방법 마련('25.10월)

- ☐ (평정 과정) ①평가위원이 소속 소위원회의 정책에 대해 평가지표별 평정, ②평가위원의 평정결과를 합산하여 점수·등급 산정, ③전체 정책의 점수·등급을 기준으로 최종 등급*을 확정**

* ①② 단계는 소위원회별 대면회의로 진행, ③단계는 전체 서면의결로 진행

** 총 7개 등급(매우 우수, 우수, 다소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부진)으로 배분

3)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 (평가대상) '2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23개 주요정책 관리과제

- ☐ (평가지표) 4개 평가항목, 8개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측정기준)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의 적절성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정도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정도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정도
계획의 적절성	현장의견 반영의 적절성	· 정책수요자·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및 자체평가위원회 의견 수렴 노력 및 반영 정도 · 관련 통계현황·사례 조사 및 반영 정도
	추진계획 설정의 적절성	· 과제별 추진계획 설정의 충실도
시행과정의 적절성	추진일정의 충실성	· 과제별 추진계획의 이행 정도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상황예외의 대응 정도
정책 효과성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 계획 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의 발생 정도
	정부 주요과제 추진 기여 정도	· 정부 주요추진과제, 정부업무평가 기여도
가점		· 성과지표 외의 특별한 실적 인정 시 · 핵심 민생과제 추진성과 달성도

2. 평가결과

가. 총 평

□ '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소속 33개 부서 총 23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 과제간 상대평가 원칙에 따라 총 7개 등급으로 배분하여 결정

- 매우 우수 1개(4%), 우수 3개(13%), 다소 우수 4개(18%), 보통 7개(30%), 다소 미흡 4개(18%), 미흡 3개(13%), 부진 1개(4%)로 나타남
- 우수 이상 과제는 「하도급분야 공정거래기반 조성」 등이며, 미흡 이하 과제는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 관행의 자발적 개선 유도」 등으로 평가됨

< 우수 이상 과제 >

< 미흡 이하 과제 >

관리과제명	평가 결과	관리과제명	평가 결과
하도급분야 공정거래기반 조성	매우 우수	플랫폼 시장에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경쟁 촉진	미흡
담합 행위 시정	우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정착 및 분쟁조정 활성화	미흡
전자상거래·약관 분야 소비자피해 방지	우수	전자상거래 분야 법위반행위 시정	미흡
혁신분야 및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행위 및 부당표시광고행위 시정	우수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 관행의 자발적 개선 유도	부진

□ 총 23개 관리과제의 44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100%(46개 성과지표 모두 달성)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성과목표 달성 수(달성률)	44개(91.7%)	46개(100%)	44개(100%)
총 성과지표 수	48개	46개	44개
총 성과관리 과제수	28개	25개	23개

나. 주요성과

□ 「하도급분야 공정거래기반 조성」 등 4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

① 하도급분야 공정거래기반 조성(Ⅲ-2-①)

- (대금 지급)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3중 보호 장치를 구축·강화하여 원사업자 대금 미지급 위험 해소
- (부당특약)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 상향
- (기술유용) 기술탈취 집중 감시체계 구축, 법집행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 기술유용 피해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행위의 금지를 청구

- (연동제) 납품단가 연동제의 적용범위를 원자재 → 에너지비용까지 확대 추진하고 제도 안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실시

⇒ (달성원인) 안정적 대금 지급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및 부당특약·기술유용 등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적극 추진

- 현장간담회, 업종별 설명회 등 실질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성과창출

② 담합 행위 시정(Ⅱ-1-②)

- (민생 분야) ▲빌트인 특판가구 및 시스템 가구, ▲통신사 판매장려금, ▲인쇄용지, ▲돼지고기, ▲설탕 등 민생 분야 담합 적발·제재
- (중간재·인프라 분야) ▲건설사업 관리 용역, ▲스테인리스스틸, ▲아연 도금철선, ▲차량용에어벤트 등 중간재 및 인프라 분야 담합 집중 점검
- (공공·조달 분야) ▲국고채, ▲공공기관 발주 목재펠릿 입찰 등 공공·조달 분야의 담합행위 엄단

⇒ (달성원인) 다양한 분야에서 담합행위를 철저하게 조사·제재함

③ 전자상거래·약관 분야 소비자피해 방지(IV-1-①)

- (C2C)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전자상거래법 개정)
- (이용후기 투명성 강화) 사업자가 소비자 이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그 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도 함께 공개하도록 의무화
- (임시중지명령 실효성 제고)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영업 중지뿐만 아니라 문제되는 행위만 특정하여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
- (표준약관) 결혼준비대행업 가격 정보 제공 및 위약금 기준 구체화, 신유형 상품권 환불비율 최고 100%까지 상향 등 **표준약관 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음식점 노쇼(no show) 위약금 현실화 등 변화된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을 반영하여 분쟁해결기준 개정

⇒ (달성원인) C2C 플랫폼 규율 도입 및 다크패턴 관련 법령 개정을 시의적절하게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유관기관·업계와 적극 소통

④ 혁신분야 및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행위 및 부당표시광고 행위 시정(II-1-①)

- 온라인쇼핑 등 혁신분야에서 소비자 기만적 광고 행위를 시정하고, 숙박앱·배달앱 등 국민 생활밀접 분야에서 불공정행위 적극 조사
- 시스템 반도체, 온라인 동영상 및 음원 재생 서비스 관련 적극적인 연성집행으로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시정
- 체육시설업 이용 소비자가 등록 전 서비스 내용, 요금체계, 환불 기준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업자들의 자율적 시정 유도
- 가전·전자제품의 AI 워싱과 육아용품 관련 부당광고 실태를 점검하여 자진 시정하게 하거나 판매 사이트 차단 조치

⇒ (달성원인) 국민생활 밀접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AI 워싱 등 새로운 이슈에 적극 대응

다. 개선·보완 사항

- 정책체감도가 다소 낮고, 지표 설정 등에 한계가 있었던 사항 중심으로 보완
 -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은 4개 과제의 경우, 상당한 투입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도출하는데 한계
 - 일부 성과지표는 과제의 주요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
- ⇒ 정책체감도가 높고, 주요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과제 및 지표 개선·보완

(4) 평가결과 종합

과제 번호	관리과제명	평가결과
1	시장분석 및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다소 미흡
2	기업결합 심사 효율화 및 신산업 분야 심사 강화	보통
3	선진화된 M&A 심사제도의 안착	보통
4	부당내부거래 근절 등 건전한 대기업집단 질서 확립	보통
5	효율적인 심의 운영 및 제도 개선	보통
6	플랫폼 시장에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경쟁 촉진	미흡
7	혁신분야 및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행위 및 부당표시광고행위 시정	우수
8	공정경쟁 정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교육·홍보활동	보통
9	담합 행위 시정	우수
10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 및 대기업집단시책·공시의무 위반행위 제재	다소 우수
11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 관행의 자발적 개선 유도	부진
12	하도급분야 공정거래기반 조성	매우 우수
13	산업안전비용 전가, 기술탈취 등 하도급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	다소 우수
14	가맹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다소 우수
15	유통·대리점분야 거래관행 개선	다소 미흡
16	가맹·유통·대리점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시정	보통
17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정착 및 분쟁조정 활성화	미흡
18	전자상거래·약관 분야 소비자피해 방지	우수
19	전자상거래 분야 법위반행위 시정	미흡
20	다단계·방문판매·할부거래 분야 소비자피해 방지	다소 미흡
21	다단계·방문판매·할부거래 및 약관 분야 법위반행위 시정	보통
22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	다소 우수
23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다소 미흡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1	시장분석 및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다소 미흡
---	--------------------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규제개선) AI·ICT, 친환경, 고령친화 등 미래전략산업의 성장과 시장 진입 활성화, 기업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규제개선과제 22건 확정
 - 자체 시장분석, 전문가 연구용역, 사업자단체 의견수렴 및 언론 모니터링 등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과제 43건 발굴(3월)
 - 소관 부처 의견수렴(3~6월), 부처 간 실무회의(수시), 규제개혁위원회 보고(8월, 11월) 등을 거쳐 22건에 대한 개선안 확정·발표(12월)

< 2025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주요 사례 >

① 캠핑용 차량의 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여 허용

- ▶ (문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보유한 캠핑카는 타인대여가 제한됨에 따라 유휴 캠핑카 난립 등 비효율 발생
- ▶ (개선) 캠핑카를 보유한 개인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타인에게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 ⇒ 유휴 캠핑카 난립 해소 및 공유 경제 활성화 기여

② AI기술개발을 위한 원본데이터 활용 허용

- ▶ (문제) AI기술 개발 목적을 위해서는 AI 솔루션 등이 가명처리(모자이크 등) 없이 원본 데이터 그대로를 학습할 필요가 있으나, 법률적·기술적 한계
- ▶ (개선) AI 기술개발 목적의 경우 가명처리되지 않은 원본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 특례' 도입 추진
 - *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정보위 심의·의결 거쳐 허용
 - ⇒ 자율주행 등 AI 관련 분야 기술 개발 촉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③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소 셀프 충전 허용

- ▶ (문제) LPG 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셀프로 자동차 연료용 LPG를 충전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충전사업자의 경영난 가중 및 이용자 불편 발생
- ▶ (개선) 일정 충전설비(안전설비 등) 조건을 갖춘 충전사업소에 한해 LPG 셀프 충전 허용
 - ⇒ 충전사업자의 경영부담 완화 및 LPG 자동차 운전자 편의 향상

- (시장분석) 독과점(방위산업·기업회계감사), 신산업(가상자산거래)을 선정하여 시장현황, 주요 규제개선 이슈 등을 파악하고 업계 의견수렴

분야	주요 분석과제
방위산업	K-방산의 수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산물자업체 지정제, 방산 기술 보안 감점제, 수출심사 절차 등 개선
기업 회계감사	기업 회계감사 시장구조 및 규제 현황 분석을 통해 기업 회계감사 시장의 경쟁 촉진 및 품질 제고 방안 마련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거래시장 경쟁 촉진 및 이용자 편의혁신성 제고 방안 마련

- 전년도 시장분석(주류, 제빵 산업)을 바탕으로 제도·관행 개선 추진

- * (주류)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발급 확대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연간 3만→4~6만 드림)(제빵) 설탕(정제당) 할당관세 적용 물량 10만톤→12만톤으로 확대

- (영향평가) 전문연구기관(공정거래조정원 경쟁영향평가TF)을 통한 경쟁영향 평가 역량을 강화해 중요규제에 대한 평가 품질 향상*

- * (양적) 역량강화 사업 이전 대비 대안제시 비율 증가: ('20~'22)1.35% → ('23~'25)2.16% (질적) 계량분석+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소관부처 수용도 제고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향후에도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에 대한 효과를 분석할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부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개선과제의 경우 쟁점사항 수정·보완 후 재협의 등을 통해 지속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달성도	미흡	•지표달성률: ① 100.7%, ② 100%
2. 계획의 적절성	미흡	•향후에도 사건 처리 효과 분석을 고려해볼 필요
3. 시행과정의 적절성	우수	•특이사항 없음
4. 정책효과성	미흡	•사건처리 효과 분석은 의미 있는 시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심층심사) '25년 기업결합 심층심사 처리건수 : 42건

* 심층심사는 경쟁제한성이 ▲법률상 추정되거나, 시장점유율 및 시장 집중도 분석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의심되는 경우 실시

- 경쟁사 및 인접시장 사업자, 소비자 등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해 심사결과의 타당성 제고

< 주요 사건 >

-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회사 시놉시스-앤시스 간 M&A 조건부 승인(3월)
 -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광학 및 포토닉스 설계 소프트웨어 각각 시놉시스 혹은 앤시스의 자산 일체를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시정조치 부과
- 국내 OTT 사업자 티빙(Tving)-웨이브(Wave)간 M&A 시정조치 부과(6월)
 - 가격 인상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6년말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치
-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 지마켓-알리 간 M&A 시정조치 부과(9월)
 - 데이터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 데이터를 상호 분리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노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시정조치를 부과

○ (간이심사) '25년 간이심사 건의 평균 처리일수 : 9.1일

- 간이심사 처리일수는 과거 3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 중*

* 9.7일('22년) → 8.8일('23년) → 8.2일('24년) → 9.1일('25년)

- 경쟁제한성 검토가 필요한 기업결합으로 심사 역량을 집중하여 일반 심사 처리 일수는 평균 18.5일로 전년 대비 4.4일 단축*

* 23.9일('22년) → 25.7일('23년) → 22.9일('24년) → 18.5일('25년)

○ (시정조치 이행관리)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이행을 엄정히 관리*하여 항공시장 경쟁생태계 회복

* 아시아나항공의 운임인상 한도 위반행위 제재(8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공급좌석 유지 의무 위반행위 제재(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등

- (구조조정 민관협업) 최근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자율적 사업재편 관련 “신속·면밀한 심사” 원칙 하, 산업계·관계 부처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결합 심사 사전준비 철저

* 주요 석화업체 참여 현장간담회 개최(9.23.) 등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신속 심사를 위한 제도(사전협의, 사전심사)를 안내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당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M&A 심사의 신속성·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협의 절차를 도입 하였으나, 아직까지 실제 활용 사례 부족
- 기업결합 설명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기업의 M&A 추진에 긍정적인 효과 및 실제 활용 사례 등에 대해 홍보(연중)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달성도	보통	•적극적으로 신산업, 새로운 경쟁제한성 등을 고려한 시정조치가 인상적 •지표달성률: ① 102.6%, ② 108.3%, ③ 100.0%
2. 계획의 적절성	미흡	•미신고 일제점검 시 자동화 가능한 부분이 없을지 고려할 필요
3. 시행과정의 적절성	보통	•석유화학 산업에서의 기업결합 신속심사 노력 인상적
4. 정책효과성	보통	•항공산업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점검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새로운 방식의 기업결합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 검토

- 신유형 기업결합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연구용역 주요 내용 >

- AI 분야 신유형 파트너십 현황과 유형
- 국내외 신유형 기업결합에 대한 대응 현황
- 신유형 기업결합에 대한 대응방안
 - 신유형 기업결합을 기존 기업결합 유형에 포섭하기 위한 방안 검토
 - 신고요건에 미달하는 신유형 기업결합을 심사대상에 포섭하기 위한 방안 및 그 실효성 검토

○ 기업결합 신고·심사 제도 안착을 위한 홍보 및 소통 강화

- '24.8월 시행된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기업 및 법률대리인 등 대상 간담회 개최

*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하여 결합당사회사가 직접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고려하여 시정방안을 설계하는 제도

- '25.6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성 변화도 판단하도록 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내용* 설명

* 플랫폼이 포함된 결합으로 인한 이용자 수 증가나 정보자산의 통합이 이용자 편익을 증가시키는지 여부,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나 생산유통과정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개정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당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시정방안 제출제도 등 신규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향후 간담회, 설명회 지속 개최 추진

- 직접적인 정책 대상자 및 이해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 청취 및 추후 개선 방향 모색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달성도	우수	•지표달성률: 100.0%
2. 계획의 적절성	우수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함
3. 시행과정의 적절성	보통	•특이사항 없음
4. 정책효과성	미흡	•신유형 기업결합 관련 선제적인 분석은 긍정적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과징금 부과체계 합리화

- 대기업집단 규율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발의

<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내용 >

- (주요내용) 공정거래법 상 대기업집단 관련 상호순환출자 금지,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금지 등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탈법행위) 금지 규정(제36조)을 위반한 자에게 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 내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기대효과) 제재수단의 합리성 확보, 적정수준의 조치 → 대기업집단 규율 실효성 제고

○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 제정

- TRS 등의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과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규제회피 가능성 효과적으로 차단

<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 규율대상, 판단기준 및 유형 >

◆ 규율대상

- ① 채무증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왑[약칭 TRS]
- ② 신용연계증권(특정 기업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위험을 이전시키고, 그에 따른 대가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용연계채권[약칭 CLN]
- ③ 신용변동(기업의 파산, 부도 등으로 인한 채무의 완전 불이행 위험을 이전시키고, 그에 따른 대가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계약)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용부도스왑[약칭 CDS]

◆ 판단기준

- 계열사가 기초자산을 발행한 다른 계열사의 신용위험만을 이전할 때 실질적으로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 유발 → 이 경우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해당
- * 기업의 신용등급 등 기초자산의 신용도 변동에 의한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

◆ 유형 예시

- (해당 유형) 채무증권 또는 신용연계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실질상 채무보증 효과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유형)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기초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에 따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당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입법 과제의 원활한 발의 및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달성도	우수	•과징금 부과체계 합리화 등 전반적으로 잘 수행함 •지표달성률: 100.0%
2. 계획의 적절성	보통	•특이사항 없음
3. 시행과정의 적절성	미흡	•기업거버넌스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하였음
4. 정책효과성	미흡	•정책 환경 변화로 인하여 일부 정책 추진이 지연되거나 재논의되었던 부분이 있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신속한 심의를 위한 위원 증원 발의

- 신속하고 내실있는 심결을 위하여 상임·비상임위원을 각 1명씩 증원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추진

- 개정법 시행(27.2.7.)에 맞춰 전자심의시스템 구축·운영이 가능하도록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신속히 수립(25.3월~7월)
- 심의 관련 문서 등을 전자적으로 제출·송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

○ 사건절차규칙 개정

- 심사관 전결 및 약식절차 적용 확대를 통해 효율적 사건처리를 도모하고 피심인 의견제출기간 연장, 재심사명령 사실 통지 등 피심인 방어권 강화

구분	주요 내용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① 담합사건 전원회의 소관 기준 상향 [입찰 외 담합: 1,000억→3,000억 원, 공공부문 입찰담합: 500억→1,500억 원, 민간부문 입찰담합: 500억→3,000억 원] ② 심사관 전결 대상 확대 가. 전결 경고 기준 상향 (예)불공정거래행위: 매출액 75억→100억 미만 나. 기업집단 분야 심사관 전결 경고 기준 신설 다. 자진신고자 감면 사건에 대한 심사관 전결 규정 신설 ③ 소액과징금 약식절차 확대 [3억→10억 원 이하] ④ 서면심의 및 원격 영상회의 근거 마련
피심인 방어권 강화	①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간 연장 [전원회의의 안건 4→8주, 소회의의 안건 3→6주] ② 재심사명령 사실 피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규정 마련 ③ 약식절차 수락여부 조회 시 첨부자료 송부 규정 신설

사건처리절차
명확성 제고

- ① 의견청취 및 심의 발표자료 제출 의무 신설
- ②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특칙 마련
- ③ 재신고 사건 처리절차 현행화
- ④ 고발요청에 의한 고발을 심의 전에 한 경우, 전원회의 보고

○ 동의를결규칙 개정

- 의견제출기간 단축 명문화, 심의기간 정비, 중복되는 절차 삭제 등 동의를결 사건처리 절차 효율화

○ 손해배상소송 지원 제도 확충

- 손해배상 소송 시 불공정거래 피해자의 자료확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및 갑을 4법* 개정안 입법 지원

*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당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위원 증원 발의) 위원 증원 법안이 공정위 인력 확충 계획에 맞춰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사업이 법 시행일에 맞추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달성도	보통	•24년 대비 더 나은 실적을 달성 •지표달성률: 100.0%
2. 계획의 적절성	우수	•특이사항 없음
3. 시행과정의 적절성	보통	•열악한 환경에서 일상적인 심의 수행에 매우 많은 노력이 투입되었음
4. 정책효과성	보통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시스템 구축 등 노력한 것을 높게 평가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플랫폼 제도 마련)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등 플랫폼 관련 발의 법안을 검토·심층논의하는 등 합리적 플랫폼 제도 수립 노력

-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장 참여자 간 소통을 촉진하여 합리적 제도 마련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 (업계) 유통분야 납품업체 간담회(9.29.), 입점업체 간담회(11.13.) 등
(학계) 플랫폼법정책학회 세미나(6.13.), 공정위-산조학회 학술대회(10.16.) 등

- 해외 경쟁당국 등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플랫폼 시장의 최신 경쟁 이슈, 각국의 정책 동향 등을 파악

* (경쟁당국) 일본(4.18., 9.3.), 폴란드(9.3.), 캐나다(9.3.) 경쟁당국 등 면담

- (상생 환경 조성) 플랫폼 분야별 맞춤형 상생협력 방안의* 이행을 지원하여 시장 참여자 간 협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 조성

* 민간 스스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등 협의체가 구성되었으며, 정부는 협의체의 운영 및 도출된 상생협력 방안의 시행을 지원

- (배달앱)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고, 음식점이 배달 주문 수행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소비자도 인지할 수 있도록 영수증에 명시

* 배민.쿠팡이츠: (기존) 9.8% → (향후 3년간) 7.8%(상위 35%) ~ 2.0%(하위 20%)

** 음식점은 배달앱 중개수수료 외에도 결제수수료, 배달비 등을 부담

- (모바일상품권) 모바일상품권 상생방안 이행 개시(3월) 및 보도자료 배포, 상생방안 참여 신청 접수 등을 통한 제도 홍보 및 시행 지원

< 모바일상품권 상생방안 주요 내용 >

상생방안 적용 前		상생방안 적용 후
①카카오톡 선물하기 수수료 최대 14%	⇒	①카카오톡 선물하기 수수료 최대 8% (298개 가맹브랜드 적용('25.2월 기준))
②우대수수료 체계 미비		②가맹점주가 지불하는 수수료를 3% 이하로 인하하는 우대수수료 적용
③정산주기 약 60일		③정산주기 약 30일로 단축 (257개 가맹브랜드 적용('25.2월 기준))

- (숙박앱) 6,300여개 업체 대상 숙박앱 중개수수료를 1%p 인하*하고,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발족(2.28.)

* 숙박앱 분야 자율협의체에서 마련('24.9.)된 상생 방안으로, 야놀자는 '25.1월, 여기어때는 '24.11월부터 거래금액 기준 하위 40% 업체에 대해 중개수수료 인하 적용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어려운 환경에서 성과가 노력에 비해 드러나지 않아 아쉬운 측면
- 드러난 성과가 작년 상생협력방안의 이행 위주인데, 실질적 제도 개선 관련 논의가 이어질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플랫폼 규율체계 수립을 통해, 민간의 상생협력 방안을 더 안정적으로 제도화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달성도	미흡	•지표달성률: 100.0%
2. 계획의 적절성	미흡	•간담회 개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은 긍정적
3. 시행과정의 적절성	보통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속적인 노력 돋보임
4. 정책효과성	보통	•최근의 소송결과를 반영한 실질적 제도개선 논의 필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1) 혁신분야 및 국민생활 밀접분야 불공정거래행위 등 조사·시정

- 네이버의 네이버플러스멤버십 이용 혜택 관련 기만적 광고 행위 제재(2월)
-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자사 유통 음원·음반의 인기를 상승시키고자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제재(3월)
- 무신사·신성통상·이랜드월드·아이티엑스코리아 등 의류 사업자가 인조가죽제품을 친환경 상품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 제재(5월)
- 야놀자·여기어때가 중소 숙박업소(모텔)가 유료로 구매한 후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별도 보상 없이 소멸시킨 행위 제재(8월)
-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가격·위약금) 등 관련 허위과장광고 행위 제재(9월)
- 쿠팡이츠·배달의민족의 최대우요구, 끼워팔기 등 독과점력 유지·강화 및 소상공인 대상 불공정행위 안전상정(10월~11월)
- 건강기능식품(비타민 등) 제조사인 에프앤디넷이 자사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병·의원 등에 부당한 경제적이익을 제공한 행위 제재(11월)

2) 사업자 자율시정 유도 등 연성집행

- 브로드컴 동의의결 확정
 - 국내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 배타조건부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를 즉시 시정하는 한편, 관련 분야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
- 구글 동의의결 확정
 - 유튜브 뮤직 이용 없이 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 및 상생기금 출연

- 체육시설업 중요정보 미표시행위에 대해 자율적 시정 유도
 -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전 서비스 내용 및 요금 체계, 환불 기준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계도

3) 실태조사를 통한 상시적인 범위반 모니터링 실시

- (AI위싱*) 부당 표시·광고 실태를 파악하여 가전·전자제품 대상 등 총 20건의 의심사례 적발, 사업자 자진 시정 완료(~10월)
 - * 인공지능 기술과 무관하거나 제한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거짓·과장되게 광고하는 행위
- (육아용품) 부당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다수의 의심 사례 적발, 사업자 자진시정 또는 판매 사이트 차단 조치 완료(~10월)

4) 사건 및 이슈별 전문가·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

- 관련 시장 상황 현황 및 불공정 이슈 파악을 위한 업계 의견 청취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당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플랫폼 분야에서 독점력 남용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관행 등에 대해 조사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달성도	우수	•업무 범위가 넓은데도 상당한 성과를 달성 •지표달성률: ① 103.3%, ② 127.6%
2. 계획의 적절성	미흡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서 민생과 밀접한 배달앱 관련 TF를 통해 집중적으로 사건 처리한 것은 긍정적
3. 시행과정의 적절성	우수	•AI 위싱 등 새로운 유형에 대해 적극 대응함
4. 정책효과성	우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건을 적극 처리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1) 담합, 독과점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 디지털 시장의 핵심 경쟁요소인 데이터가 경쟁 및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 발간
- 실태조사, 연구용역,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내 학술대회 등을 통해 디지털 시장의 데이터 관련 잠재적 경쟁이슈를 파악

- 전세계 경쟁당국의 카르텔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당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하기 위한 2025 ICN* 카르텔 워크숍 개최

* 국제경쟁네트워크(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는 경쟁법 분야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법 집행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 구성된 협의체로서, 현재 146개 경쟁당국이 참여

- 웹소설 분야에서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웹소설 표준계약서 3종* 제·개정 완료

* ①출판권 설정계약서, ②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③연재계약서

- 문체부·이해당사자*와 함께 「웹소설 생태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을 통해 웹소설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 민관 합동 '웹소설 분야 상생협의체'를 출범·운영

- 제약사의 의료인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범위 등을 구체화·명확화하는 취지의 공정경쟁규약 등 개정안 심사·승인

- 신고포상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명문화하고 포상금 지급대상 연락 업무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

2)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대외협력

- (카르텔 업무설명회) 담합 관련 주요 법령·제도, 심결·판례 등을 소개하고,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는 카르텔 업무설명회를 개최

○ 법 위반 예방 교육 강화

- (공공분야) 조달청 산하 공공조달역량개발원과 협업해 조달업체 임직원, 공무원·공공기관 업무 담당자 대상 입찰담합 예방 교육 실시
- (민생 밀집 분야) 교복, 가구 분야 담합 등 법위반 예방을 위해 입찰담합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료를 마련·배포
- (해외 진출기업) 미국, EU, 중국 등 현지에 진출한 사업자들의 각 국가별 경쟁법 위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실시
- 카르텔 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제작하여 매월 정책고객에게 이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 홍보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당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연구 결과 등에 대하여 영문화하고, 홍보를 활성화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달성도	보통	•작년 AI에 이어 올해는 데이터 관련 집중적인 시장 분석과 경쟁촉진 방안을 검토함 •지표달성률: ① 100.0%, ② 100.0%
2. 계획의 적절성	보통	•실태조사, 비교법 분석, 현재 시장상황 등을 망라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3. 시행과정의 적절성	보통	•정책보고서의 투명성 등이 인상적
4. 정책효과성	미흡	•더 많은 홍보가 이어질 필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1) 시장경쟁질서를 훼손하고 국민경제 부담을 가중하는 담합 시정·조사

○ 민생 분야에서의 담합 적발

-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고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빌트인 특판가구 및 시스템 가구, ▲통신사 판매장려금, ▲인쇄용지, ▲돼지고기, ▲설탕 등 민생 분야 담합 적발·제재

- (빌트인 특판 가구 및 시스템가구) 50여개 가구 제조판매사들이 빌트인 특판가구 및 시스템가구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 제재(과징금 총 328억 원)
- (통신사 판매장려금) 이동통신 3사가 특정 통신사에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편중되지 않도록 판매장려금 수준을 공동으로 조정기로 합의·실행한 행위에 대해 제재(과징금 963억 원)
- (인쇄용지) 6개 제지사업자들이 인쇄용지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한 행위 적발(10월, 안전상정)
- (돼지고기) 11개 육가공 및 축산물 제조·유통업자들이 돼지고기 일반육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또는 최저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 적발(10월, 안전상정)
- (설탕) 3개 설탕 제조·판매업자들이 국내 B2B 경로 설탕 가격을 담합한 행위 적발(10월, 안전상정)

○ 중간재·인프라 분야에서의 담합 제재

- 산업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설사업 관리 용역, ▲스테인리스스틸, ▲아연도금철선, ▲차량용에어벤트 등 중간재 및 인프라 분야 담합 집중 점검

- (건설사업관리용역) 20개 건축사사무소가 LH·조달청 발주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한 행위를 적발·시정(과징금 237억 원)

- (스테인리스스틸) 4개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 제조·판매사가 약 2년간 원자재 단가 인상 시점 및 인상 폭에 맞추어 제품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제재(과징금 34억 원)
- (아연도금철선) 5개 아연도금철선 제조·판매사가 약 5년간 원자재 비용 상승 또는 하락 시점에 맞추어 제품 판매가격을 인상 또는 유지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제재(과징금 65억 원)
- (차량용 에어벤트) 현대모비스 등 발주 차량용 에어벤트 입찰 참여 2개 사업자의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 담합 적발(교발, 과징금 354억 원)

○ 공공·조달 분야 담합 제재

- 국가 예산 낭비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공·조달 분야 담합 행위 엄단

- (국고채) 국고채전문딜러로 지정된 15개 은행·증권사들이 입찰금리 등을 합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교환한 행위 제재착수(2월, 안전상정)
- (목재펠릿)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사들이 발주 목재펠릿 입찰에서 4개 사업자가 투찰물량·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행위 제재(과징금 14억 원)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건 처리를 위한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

- 사건처리 시 다양한 입장, 시각, 견해, 이론 등을 폭넓게 고려하기 위하여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청취
- 공공부문 입찰관계기관 협의회를 실시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 예방방안을 논의

3) 사건처리 효율화

-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16개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입찰정보를 분석하여 담합징후를 포착(연 2회 실시)
- (사건처리 TF) 사안의 중대·시급성, 사건의 규모,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주요 사건별 TF를 구성·운영하여 집중 조사 진행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당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생활물가 상승 등에 편승한 민생분야 담합 집중감시 필요
- 정보교환, AI를 이용한 신유형 담합 등장, ICT발전에 따른 담합 적발 난이도 상승에 따라 빅데이터 등에 기반한 조사 역량 강화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달성도	우수	•지표달성률: 101.9%
2. 계획의 적절성	보통	•입찰담합 징후시스템을 발전시켜 잘 활용 중임
3. 시행과정의 적절성	우수	•신유형 담합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
4. 정책효과성	우수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한 카르텔을 철저히 점검·적발하였음

10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 및 대기업집단시책·공시의무 위반행위 제재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1)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 조사 및 제재

- 대방건설이 자신 및 계열사가 보유한 **알짜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및 그 자회사들에 상당 규모로 전매한 행위 제재**(2월,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5.6억 원, 법인 고발)
-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회사**(중흥토건 및 6개 계열회사)의 **PF대출 및 유동화 대출 24건에 대해 약 3조 2,000억 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무상 제공한 행위 제재** (6월,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원, 법인 고발)
- CJ 및 CJ CGV가 각각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하여 계열사들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 제재** (7월, 시정명령 및 과징금 65.4억 원)
-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5개 계열사에 상당한 규모(4,997억원)의 공사 물량을 제공한 행위 제재** (11월,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3.8억원, 법인 고발)

2)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행위 제재

- 지정자료 허위제출, 주식소유 현황 신고규정 위반, 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 채무보증현황 신고규정 위반 등 **총 25건 상정·처리**
-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행위를 감시·제재하여 중소·독립기업의 경쟁기반을 침해하는 사익편취, 부당지원행위로 이어지지 않게 예방

3) 공시의무 이행점검

-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01개 계열회사, 232개 공익법인 및 동일인 대상 공시의무 이행 점검

- 5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30개 계열회사·공익법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46건을 적발하고 총 6.6억원의 과태료 부과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당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AI 등 IT 기술을 적극 도입해 업무 효율을 높일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달성도	보통	•평소보다 사건처리 환경이 다소 어려워졌음에도 목표를 상회하여 사건 처리함 •지표달성률: ① 102.3%, ② 106.1%, ③ 100.0%
2. 계획의 적절성	우수	•제한된 인력으로 성과를 거두었음
3. 시행과정의 적절성	보통	•조사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짐
4. 정책효과성	우수	•새로운 형태의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를 조사·제재

11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관행의 자발적 개선 유도

부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 집단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 공개**
 - (대기업집단 지정) 공시대상 기업집단 9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6개 지정을 통해 대기업집단 시책(사익편취규제, 공시의무, 채무보증제한 등) 적용대상 확정
 -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 변동 현황, 국외계열사 출자관계, 신규지정 집단의 순환출자 현황, 주식지급약정 현황 등
 - (채무보증현황 분석·공개) 계열사 간 채무보증 현황과 함께 사실상 채무보증과 유사한 파생상품의 거래실태 공개
 -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현황 분석·공개) 공익법인 의결권을 행사한 구체적인 기업집단과 안건의 유형을 공개
 - (내부거래 현황 분석·공개) 유형별·업종별 내부거래 현황, 총수일가 지분 율에 따른 내부거래 규모,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등
 - (CVC 현황 분석·공개) 일반 대기업 VC와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간 현황 비교, 세부주체별(모태펀드, 성장금융, 연금 등) 출자비중, 피투자기업의 업력별 (초·중·후기)·업종별(ICT, 바이오, 유통 등) 투자현황 세부 분석 등
 - (지주회사 현황 분석·공개) 지주회사 변동 현황, 재무 현황, 소속회사 현황, 지주전환집단의 계열회사의 지주회사 편입률 등
 - (지배구조 현황 분석·공개) 총수일가 이사 등재 현황, 사외이사 현황, 내부 위원회 운영, 소수주주권 행사, 집중·서면·전자투표제 도입 현황 등
 - (소속회사 변동 현황 공개) 분기별 대규모기업집단 편입(회사설립·지분 취득 등) 및 제외(흡수합병·지분매각 등)에 따른 소속회사 변동현황 등

- 공시의무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정기·수시교육 및 현장 컨설팅, 실시간 상담 및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상시점검을 통해 신속한 정정을 유도
- (집합교육 및 현장컨설팅) 분기별 정기 교육(4회) 및 수시 교육(2회)을 실시하고, 실무자 대상 1:1 맞춤형 집중상담 제공
- (상담 및 안내서비스) 국민신문고, 유선상담 등을 통한 공시 관련 질의 사항을 실시간 안내하고, 상담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위반유형과 제도개선 사항, 유의사항 등을 매월 공시담당자에게 안내메일 발송(12회)
- (상시 모니터링) 공시자료를 상시 점검하여 단순 누락·오기로 인한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한 정정을 유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대기업집단 관련 정보공개의 양과 질이 크게 상승하였으나, 새로운 항목 발굴 노력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거래소 공시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 공개 항목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달성도	미흡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이 이전보다 향상됨 •지표달성률: ① 100.0%, ② 100.0%
2. 계획의 적절성	미흡	•추가적 분석이 가능한 새로운 항목 발굴 필요
3. 시행과정의 적절성	미흡	•정보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음
4. 정책효과성	보통	•내부거래, 지분도 등 정보를 분석·가공하여 보고하는 역량이 상승하여, 실제 기업집단 자율 감시 및 규율 역량을 제고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12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기반 조성

매우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1) 하도급거래 및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안정적 대금 지급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3중 보호장치를 구축·강화하여 원사업자 대금 미지급 위험 해소
 - (지급보증기관) ▲지급보증 면제사유 대폭 축소,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명시, ▲지급보증 상시 감시체계 마련을 통한 지급보증의무 확대
 - (발주자) 수급사업자가 적시에 발주자에게 직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요청권 신설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계좌분리, 인출제한 등 기능을 통해 중간단계 사업자의 자금유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
- 부당특약 및 산업재해 관련 제도 개선
 - (부당특약)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여 부당특약의 사전예방 및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도모(4월, 하도급법 개정)
 - (산업재해)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청업체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 상향 (12월,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개정)

2) 기술유용 행위 근절 및 피해구제 활성화 추진

- (제도개선) ▲기술탈취 집중 감시체계 마련, ▲법집행 전면적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 (11.4)
- 이외에도, 기술유용 피해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개정 완료(8월)
- (교육·컨설팅) 기술자료에 대한 인식제고 및 유용행위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중기부·지재처 등)과 연계한 현장 설명회 및 1:1 컨설팅 실시

- (매뉴얼 개정·보급) 주요 기술유용행위 유형에 대한 심결례·판례를 반영한 매뉴얼 개정·보급

3) 납품단가 연동제 현장안착 지원

- 연동제 적용범위를 원자재 →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추진
- 대중교통·라디오·유튜브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와 기업 대상 찾아 가는 현장홍보를 통해 제도 인지도 제고

4) 공정거래협약을 통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도모

- 금융(자금)지원 항목의 배점 상향, 청년 일경험 지원 실적 인정 등을 내용으로 협약이행평가 기준 개정
-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관련 기업 대상 설명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를 통해 상생협력 문화 확산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당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제도 개선사항 발굴, 법령 개정 및 환류 등 업무 전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 이해관계자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달성도	보통	•정책 관련 현장소통 건수는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과정지표로, 신규 지표임에도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초과달성함 •지표달성률: ① 110.0%, ② 110.0%, ③ 106.3%
2. 계획의 적절성	우수	•현장간담회, 업종별 설명회, 학회 공동 심포지엄 등 정책 환류 목적의 실질적 소통이 적극 이루어짐
3. 시행과정의 적절성	우수	•특이사항 없음
4. 정책효과성	우수	•하도급 대금 지급, 부당특약, 기술유용행위 근절 등을 위한 정책 개선 등의 노력을 강화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1)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기술유용행위 감시·제재

- 핵심 기반산업 및 국민생활 밀접 업종에서의 기술유용행위 적발·제재
 - (자동차금형) 두원공조, 현대캐피코, 디엔오토모티브 등 3개 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적발·제재(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2억 원 부과)
 - (기계부품) 도쿄일렉트론코리아, 카팩발레오 등 2개 기업의 기술유용행위 적발·제재(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1억 원 부과)
 - 이 외에도 자동차·기계 분야 및 생활가전 분야 기술유용행위 안건 상정
- 촘촘한 기술탈취 감시망 구축을 위해, ▲기술보호 감시관 제도 신설, ▲유관기관 협업 정례화 및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재편
 - 기술탈취 혐의 등에 대해 수시 제보하는 기술보호감시관 제도 도입 및 하도급 현장에서 실제 활동하는 기술보호 감시관(12명) 위촉(11.4.)
 - 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등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를 정례화하여 기술탈취 관련 정보교류 등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 기술탈취가 빈발하여 자문 수요가 높은 분과를 세분화하고 업계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

2)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적발·제재

- (산업안전) 건설 및 물류서비스 분야 산업안전비용 전가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여 안건상정까지 신속 처리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제도 시행('23.10월) 후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미기재한 가구·레미콘 업종 3개사 첫 적발·제재(9.22.)

- 게임, 자동차 금형 등 분야 하도급법 사건 347건 처리
- **업계 간담회 개최**, **유관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소지가 있는 거래 관행의 발생 여부를 적극적으로 포착하는 등 협업노력 강화

3)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수급사업자들이 설 304억원, 추석 232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처리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당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기술탈취 사건처리의 중요성 등에 대한 홍보 강화 필요
- '26년도 하도급 분야 조사인원 증대를 대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직권조사 계획 수립·실시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달성도	우수	•기술유용 분야 전문성이 높아짐 •지표달성률: ① 105.3%, ② 100.0%
2. 계획의 적절성	우수	•산업안전, 기술탈취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서 신속하고 강도 높이 대응
3. 시행과정의 적절성	보통	•보복 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익명제보센터 구축, 감시관 제도로 대응
4. 정책효과성	보통	•당초 계획한 정책효과를 실질적으로 구현

14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1) 가맹분야에서의 구조적 불균형 시정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 (창업)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정보공개서 내용·체계 개편, 직영점 운영 의무 확대 등을 통한 가맹희망자의 창업 안정성 강화
- (운영) 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점주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여 가맹본부와 점주 간 대등한 협상 기반 마련 및 점주 협상력 제고
- (폐업)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을 가맹사업법에 명시하고 위약금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한계가맹점주의 폐업 자율성 보장

2) 가맹분야 공정거래 관행 및 상생문화 확산

- 상생협약 우수 가맹본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업계의 상생문화 확산 유도
- 필수품목 제도개선 사항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가맹본부 및 점주 대상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현장홍보' 실시

3) 피해자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정비

- 실효적·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 도입 추진
- 가맹점주의 입증 부담 완화를 위한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추진

4) 가맹사업법상 제도 사각지대 보완

- 가맹사업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맹지사 보호를 위해 가맹점주에 적용되는 보호조치들을 가맹지사에 준용(가맹사업법 개정)
- 가맹계약 속고기간 단축제 취지 잠탈*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 본부와 이해관계 있는 전문가 자문 시 속고기간 단축제 적용 배제 추진

*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가맹계약 체결 전 14일의 숙고기간을 갖도록 하되, 전문가(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 시 숙고기간을 7일로 단축 → 가맹본부에 고용된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여 숙고기간을 단축받는 등 잠탈 사례 발생

- 가맹사업 개시 목적 없이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탈법행위에 활용***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등록 직권취소 근거 마련** 추진(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 서류상으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매매하여 직영점 운영의무를 회피하는 사례 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당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가맹점주 **계약해지권 보장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가맹본부, 가맹점주 등)간 **입장차**가 있어 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 방안 마련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달성도	보통	•제도의 현장 안착 촉진 활동을 신규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목표 설정의 적극성과 도전성을 모두 갖춘 •지표달성률: ① 112.5%, ② 100.0%
2. 계획의 적절성	보통	•현장 데이터와 TF 논의를 통해 정책 설계에 실질적으로 반영함
3. 시행과정의 적절성	우수	•특이사항 없음
4. 정책효과성	우수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등 가맹본부 책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15

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1) 중소 납품업체·대리점주 권익 강화

- 납품업체의 경제적 권익 보호와 거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금지급 기한 제도 개선 추진** 및 표준유통계약서상 **납품대금 보호장치 강화**

<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지급기한 개정안 주요내용 >

구 분	현행	개정안	
직매입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원칙	상품수령일로부터 30일
		예외(월1회 정산)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특약매입·위수탁·임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20일	
예외	-	정당한 사유로 발생한 지급 지연에 대한 예외조항 마련	

- (표준거래계약서) 대규모유통업체가 판매장려금 등을 공제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할 경우,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화하여 표준계약서에 규정

○ 대리점주 협상력 강화를 위한 대리점법 개정안 발의

- 대리점법에 대리점주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한 **▲불이익 제공**을 금지
- 대리점에 대한 중도 계약 해지 시 최소 2개월 전에 서면으로 2회 이상 해지 사유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계약해지절차 도입**

○ 납품업체·대리점주 대상 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권 보장

2) 유통·대리점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

- 대규모유통업법상 정액과징금 부과 한도 **2배 상향**(5억원→10억원)

- 유통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통한 현장의견 수렴 및 불공정거래관행 탐지

3) 유통·대리점 분야 자율적 거래 관행 개선 유인

- 대규모유통업법상 허용되는 판매장려금에 대한 명확한 해석기준 제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
 - 신상품 입점장려금에 있어 ▲출시의 기준을 국내시장으로 명확화.
▲신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는 상품에 대한 세부 예시 추가 등
- 여행업계 표준 거래기준 제시를 위한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 대형 유통업체 대상 수수료를 실태조사 및 납품업체·대리점주 대상 거래관행 실태조사 실시·공개
- 유통·대리점 분야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제도 및 동행기업 제도운용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추진 중인 여러 제도 개선 방안들이 실제 제도 도입으로 이어질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대리점 대상 불공정행위 규율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불공정 행위 유형에 대한 포괄 규정 마련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달성도	미흡	•지표달성률: ① 100.0%, ② 100.0%
2. 계획의 적절성	보통	•특이사항 없음
3. 시행과정의 적절성	미흡	•추진 중인 여러 제도 개선 방안들이 실제 제도 도입으로 이어질 필요
4. 정책효과성	보통	•거래관행 개선 응답 비율 상승, 장기계약 유지를 확대, 상생펀드 조성 등은 우수 성과로 평가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1)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엄중 제재 및 시장 모니터링 강화

- 가맹택시 기사가 카카오 앱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앱 이용료를 가맹금에 포함하여 일괄 징수하도록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한 카카오T블루 운영사(디지털모빌리티, 케이엠솔루션) 제재
-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들에게 전액 전가한 앤하우스 메가MGC커피 제재
- 가맹점 비용 부담을 심화하는 필수품목 구입처 강제 관련 올에프엔비 족발야시장, 장스푸드⁶⁰개, 아이더스에프엔비^{푸라닭}, 피자엔컴퍼니^{반올림피자}, 비케이알^{버거킹}, 프랭크에프엔비^{프랭크버거} 등 제재
- 2024년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기한(직전사업연도 종료후 120일 이내) 내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87개 가맹본부에 과태료 126,640천원 부과
- 구입강제품목 관련 가맹사업법 개정사항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입강제품목 제도개선사항 이행실태 점검

2)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엄중 제재

- (편의점) 편의점 4사의 미납페널티율 인하, 상품 입점장려금 기준 개선, 납품업자 지원(83억 원 상당) 등 내용으로 동의의결 확정·시행
- (온라인쇼핑몰) 카카오의 배송유형에 대한 납품업자 선택권 보장, 납품업자 지원(92억 원 상당)하는 내용으로 동의의결 확정·시행
- 유통 분야 납품·입점업체와의 소통 강화

- 사건·정책·민간 유통옴부즈만 간 공조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유통시장 거래실태 및 주요 불공정행위 파악, 법·제도 개선 관련 의견 수렴

- 홈플러스 입점점주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점주 의견 청취

3) 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엄중 제재

- 타이어, 유제품, 자동차판매 분야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불공정거래행위 엄중 제재
 - 타이어한국타이어애펀테크놀로지, 금호타이어, 유제품동원에프앤비, 빙그레, 자동차판매스텔란티스코리아 등 제재
- 대리점주(협회) 대상 설명회에서 불공정행위 파악, 법 위반혐의 제보 접수 및 대리점주의 고충·애로사항 청취 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당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조치 유형별 가중치를 반영한 시정조치 점수를 활용하여 고난도, 중대 사건 처리 노력이 반영되게 평가지표 설계 필요 등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달성도	미흡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 •지표달성률: ① 100.7%, ② 100.2%
2. 계획의 적절성	우수	•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체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함
3. 시행과정의 적절성	우수	•필수품목 제도 안착을 위해 수만 건의 서면을 점검함
4. 정책효과성	미흡	•집행 분야를 확장한 점, 유통업체 회생절차 등 최근 중요한 문제에 대해 감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17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및
분쟁조정 제도 활성화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1)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정착

- CP 법제화 완료 등 제도적 기반을 지속 정비하고, CP 포럼 등을 통해 CP 문화 확산 지원
 - (CP 평가절차 개편) 급증하는 평가신청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대면평가 도입, ▲평가지표별 평가전담위원(4명) 운영 등
 - (CP 지원) CP심포지엄(7월), 설명회(10월),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 사례 공유 등 CP포럼(12월)을 통해 CP 문화 확산 지원
- 제도 정비 및 문화 확산 지원 노력을 통해 CP평가 신청기업 증가, CP평가 신청기업의 범위반을 감소 등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인프라로 정착

2) 분쟁조정 제도 활성화

- 6개 분야(공정거래, 가맹, 유통, 하도급, 약관, 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분쟁조정 4,407건을 처리하였으며, 조정 성립률 76% 달성
 - * 2,262건(종결처리 2,145건 제외) 중 성립 1,709건 불성립 553건
 - 조정성립을 통해 '25년 연간 약 1,221억원의 경제적 성과 창출
 - * 조정금액 + 절약된 소송비용(인지대, 변호사 수수료 등)
- 민간의 자율적 분쟁해결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약칭)」 제정안 입법 추진
 - * ▲6개 법률에 산재된 분쟁조정제도 일괄 정비, ▲다양한 분쟁조정 제도 신설·보강, ▲공정거래 全 분야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설치(조정원 內) 법적 근거 마련

-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분쟁조정 지원 등 신속·효과적인 구제를 위한 기금 조성 추진
- 기금 핵심 사업으로 분쟁조정제도 내실화 및 실효성 강화를 포함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CP 참여 기업 증가는 긍정적이거나 CP 평가가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화할 방안 마련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CP 활성화) 대기업에 비해 참여가 저조한 공공기관의 참여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필요
- (법 제정)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약칭)」 제정안이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 등을 적극 지원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달성도	미흡	•지표달성률: ① 190.2%, ② 106.9%
2. 계획의 적절성	미흡	•CP와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 필요
3. 시행과정의 적절성	미흡	•CP 등급평가 신청기업 수가 증가한 것은 긍정적
4. 정책효과성	미흡	•CP 법제화 후 평가 신청 기업의 범위반율이 급감한 점은 자율준수 제도가 실질적 법 준수 문화로 정착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볼 수 있음

18

전자상거래·약관 분야 소비자피해 방지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1) 전자상거래 분야

- (C2C) 개인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전자상거래법 개정)
 - * ① 거래 당사자 간 분쟁 발생 시 법원 등에 개인 판매자 정보 및 거래내역 제공 의무화
 - ② C2C 플랫폼 수진 개인 판매자 개인정보를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로 한정
 - ③ 개인이 아닌 사업자가 C2C 플랫폼에서 제품 판매 시 사업자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등
- (이용후기 투명성 강화) 사업자가 소비자 이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그 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도 함께 공개하도록 의무화
 - * 이용후기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 (임시중지명령 실효성 제고)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영업 중지뿐만 아니라, 문제되는 행위만 특정하여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
- (다크패턴) 개정 전상법 시행(2.14)에 맞춰 다크패턴* 규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 문답서 배포
 - * 정기결제에서의 무의식적 대금증액 동의 유도, 시각적 차이를 이용한 결제 유도, 취소·탈퇴에 대한 방해행위 등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사업자의 UI(User Interface) 차원에서의 눈속임 마케팅
-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법 집행의 일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한 고시 제정
- (전자상거래법 교육 및 홍보) 지자체·공정위 지방사무소에 홍보책자 배포(9월)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 전자상거래법 교육 진행(11월)

2) 표준약관 분야

- (결혼준비대행업) 서비스 내용 및 가격 정보 제공, 위약금 기준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 제정(4월)

- (신유형상품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환불비율**을 최고 100%까지 상향(9월)
 - (국외여행) 문화부·소비자원 등과 협업하여 **여행조건 변경요건** 구체화, 특수지역 조항 삭제 등 「국외여행 표준약관」 개정 추진
 - (기타) 11개* 분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약관제도 및 표준약관 주요 내용, 약관 시정사례 등 **교육·홍보**
- * 금융, 결혼중개, 결혼준비대행, 신유형상품권, 체력단련장, 산후조리원, 골프장, 자동차대여, 장례식장, 예식장, 국외여행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분야

- 변화한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을 반영하여 소비자분쟁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분쟁해결기준 현실화**
- * 음식점 노쇼(no show) 위약금을 외식업 원가율 기준으로 현실화하여 사업자는 노쇼 피해를 보전하게 하는 한편, 사업자의 과도한 위약금 설정행위도 방지 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당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표준약관 등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소비자·사업자 인식제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달성도	우수	•지표달성률: ① 110.0%, ② 100.0%
2. 계획의 적절성	우수	•과제 추진과정에서 유관기관 및 산업계와 적극 소통
3. 시행과정의 적절성	미흡	•적극행정심의회위원회 의결을 통해 다크패턴 자율규약 참여를 유도한 것은 매우 유연한 조치
4. 정책효과성	보통	•다크패턴 관련 법령 개정은 시의적절하였으며, C2C 플랫폼 사업자 관련 제도 도입도 적절함

19

전자상거래 분야 법위반행위 시정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온라인상 거짓·기만, 청약철회 방해,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점검·시정**
 - 티몬·위메프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 제재(4월)
 - OTT·음원·쇼핑 플랫폼의 다크패턴 의심사례(45건) 확인하여 사업자 스스로 시정(34건)하도록 유도하거나 시정계획을 제출(11건)받음(2~7월)
 - 연륙교 개통 등으로 도서산간 추가배송비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추가 배송비를 부과한 온라인 쇼핑몰로 하여금 시정토록 함(12개 시정 완료)
 - 17개 의류판매업자가 패딩의 오리털 함유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행위에 대하여 조사·안전상정(11월)
-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전자상거래법 집행을 위하여 관계자 의견 청취, 업계 간담회 등 건전한 전자상거래 시장 조성을 위한 노력
 - 다크패턴 관련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앞서 사업자들에게 구체적인 법령 해석과 적용에 관한 설명회 개최 및 문답서 배포(2월)
 - 문화상품권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 미등록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실시
 - 랜덤 포토카드 등 굿즈 수집을 이용한 앨범판매 경쟁 관련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여 올바른 소비문화 조성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 관련 규율이 계도기간에 있었던 점을 고려

하여 자진시정 유도에 초점을 두었으나, 자율 규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악의적 다크패턴에 대해 조치의 사례를 남기는 것이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자상거래 분야를 적극적으로 점검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등 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달성도	보통	•지표달성률: 133.3%
2. 계획의 적절성	보통	•전자상거래 업체 회생계획 관련 소비자 보호 조치를 취한 것은 적절함
3. 시행과정의 적절성	미흡	•민원다발 쇼핑물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한 것은 제도 활용도를 높인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4. 정책효과성	미흡	•다크패턴 의심사례 관련 자진시정을 유도하거나 시정 계획을 제출받은 것은 큰 성과

20

다단계·방문판매·할부거래 분야 소비자피해 방지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특수거래 분야 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 사업자 자산운용 규제,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공제조합 감독 강화 등 상조 소비자 보호체계 내실화를 위한 할부거래법 전면 개정 추진
 -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다단계·후원방문판매 등록 시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토록 개정(방문판매법 시행규칙)
 - 소비자가 스스로 재무 상태가 건전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생협에게 경영공시의무 부과(생협법 개정)
- 플랫폼·공공기관 사칭 등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근절을 위한 TF* 운영
 - * 공정위(주관), 경찰청, 과기부, 중기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디지털광고협회
 - '25년 1~3분기 검토회의를 거쳐 사기성이 짙은 33개 업체 경찰 수사의뢰
 - 피해 예방을 위한 전국 전광판 광고, 지하철 내부 배너 광고, 피해 예방 스티커 리플릿 배포 등 홍보 추진
- 특수거래 분야 지속적·정기적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권익 보호
 - 다단계판매·선불식 할부거래 등 특수거래 관련 사업자 현황 등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
- 특수거래 분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추진
 - 청년층, 예비 사회초년생, 노년층 등 수요자 맞춤형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홍보 및 사업자·유관기관 등 대상 교육·설명회 등 진행

- (청년층) 불법 피라미드 피해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실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청년층 선호매체(인스타, 유명웹툰작가)를 활용하여 홍보물 제작
- (예비사회초년생) 사회 경험이 부족한 **고3 및 대학생** 대상으로 불법 피라미드 피해 예방 관련 **체험형 콘텐츠**를 활용하여 **현장교육** 실시
- (노인층) 디지털 정보접근이 어렵고 기만적 상행위에 취약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복지관 방문교육**(전국 31개 복지관 약 2,850명 대상) 및 **포스터, 교차로 광고** 등을 통한 **오프라인 중심 교육·홍보** 진행
- (지자체 공무원)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특수거래 분야 법 집행 담당 **지자체 공무원** 대상 **법 집행 교육** 실시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다수 발의된 할부거래법 개정안 관련, 최종 개정 작업에 힘쓸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방안 검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달성도	보통	·방문판매업, 할부거래업 등 분야에서 다양한 소비자 정책과 제도 개선이 행해짐 ·지표달성률: ① 100.0%, ② 107.4%
2. 계획의 적절성	보통	·특이사항 없음
3. 시행과정의 적절성	미흡	·불법 피라미드 관련한 홍보가 계속 이어질 필요
4. 정책효과성	보통	·상조회사 자금운용, 기업인수 등 관련 여러 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적절하였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1) 다단계·방문판매 등 특수거래 및 할부거래 분야

- (다단계판매업) 다단계판매업자의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정보 공개 자료 거짓 제출 행위** 등을 적발하여 시정
-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에서의 **법 위법행위 엄중 제재**
 -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에 대해 고발·시정명령, 경고 조치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규 회원 모집과정 및 결합상품 판매과정에서 **거짓과장 유인행위** 제재

2) 약관 분야

- 배달플랫폼 등 민생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
 - (배달앱) 쿠팡이츠 및 배달의민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상 배달앱 내 노출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등
 - (웹툰·웹소설) 연재플랫폼 및 콘텐츠 제작사 등 23개 사의 **▲2차적 저작물작성권 무단 설정, ▲저작인격권 침해** 등 시정
 - (재능마켓 플랫폼*) 3개사의 **중개책임 면제, 개인정보 유출피해 책임 전가, 원상회복의무 제한 조항**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 * 디자인, 번역, 프로그래밍 등 개인의 지식·기술·경험을 거래하는 플랫폼
-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및 도급계약서 상 업무대행비 반환 제한, ▲공사비 연체 시 조합원 개인에 연대책임 부과 조항** 등 시정
- 건강관리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불공정약관 시정
 - (산후조리원) 52개 산후조리원의 **▲과도한 위약금 부과, ▲감염 관련 사업자 책임 제한, 부정적 이용후기 제한** 등 5개 유형 불공정 약관 시정

- (체육시설업)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자(헬스·필라테스·요가)의 ▲환불 금지, ▲위약금 산정 시 과도한 이용료 공제 조항 등 시정

- (신유형상품권)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 상 ▲환불 및 환불수단 제한, ▲양도 제한 조항 등 7개 유형 불공정 약관 시정

○ 불공정 금융약관 시정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 (은행·저축은행) 은행·저축은행의 금융약관 1,735개를 심사하여 총 60개 조항(17개 불공정 유형)에 대하여 금융당국에 시정요청

- (여신전문금융) 신용카드사 등의 금융약관 1,668개를 심사하여 총 46개 조항(9개 불공정 유형)에 대하여 금융당국에 시정요청

- (금융투자) 증권사·신탁사 등의 금융약관 1,296개를 심사하여 총 66개 조항(9개 불공정 유형)에 대하여 금융당국에 시정요청

-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금융약관 68개를 심사하여 총 281개 조항(11개 불공정 유형)에 대하여 금융당국에 시정요청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당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와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점검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많은 분야에서 협업 지속해 나갈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달성도	보통	·지표달성률: ① 102.9%, ② 100.0%
2. 계획의 적절성	보통	·다양한 민생분야에 불공정약관 조항이 시정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이 평가됨
3. 시행과정의 적절성	보통	·상조회사의 상조상품과 가전상품 결합판매행위에 대한 제제조치는 필요성이 크다고 보임
4. 정책효과성	우수	·대체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이 이뤄짐

22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소비자안전 감시망 강화

- (정보수집) 위해정보 제출기관 신규 지정을 통한 위해정보 수집 확대

- (분석·활용) 수집된 위해정보를 토대로 안전주의보·리콜 업무 등에 활용*

*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이나 사고 분야를 중심으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유통 방지·개선 필요 제품에 대해 리콜 권고 16건, 품질표시 개선 27건 등 수행

- (제도개선) 위해정보 수집·분석 확대 등을 위한 기본법 제정 추진*

*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 확대, 수집된 정보의 행정기관 제공 및 위해정보 분석 강화 등을 반영한 「소비자안전기본법」 발의(11.13)

- (자율협약) 해외 플랫폼 사업자(알리·테무)와 체결한 자율 제품안전 협약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약 세부 이행기준」 마련

○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

- (종합정보 제공)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소비자24)에서 부처별 ▲안전성 인증정보와 ▲해외직구 실태조사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

-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소비생활정보 카드뉴스 491건을 제작·배포하고 대학생 디지털 홍보대사를 활용하여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제작

- (소비자 정보지 발간) 신유형 소비자문제, 소비자 상담사례 및 법률 정보, 품목별 시장 실태조사 결과 등 유용한 소비자정보 전달(연6회)

- (상품비교정보) 국민생활 밀접 상품에 대해 제조사별 품질·가격 등 비교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

○ 소비자교육 실시

- (민관협력) 소비자원, 소비자단체와 협업하여 소비자교육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 (맞춤교육) 생애주기 및 특수 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소비자교육 실시*

* 생애주기를 ①아동·청소년, ②사회초년생*, ③고령층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특수계층 교육 실시

○ 위해제품 유통 차단

- (위해제품 차단) 해외위해제품이 국내외 쇼핑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지 않도록 감시·차단 활동 강화*
- (범부처 협력) 해외위해제품관리실무협의체* 운영 → 해외플랫폼 1,641건, 국내플랫폼 제품 1,146건 등 총 2,787건 판매차단
 - * 공정위(주관), 소비자원 국표원 식약처 환경부, 관세청 제품안전관리원 과기부, 서울시 등 9개 기관
- (온라인 위해제품 모니터링 강화) 국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해외위해제품 8,441건을 적발, 그중 8,385건(99.3%) 판매차단 조치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당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소비자교육 강화) 개발 완료된 중학생 인정교과서의 적극적 확산·보급을 위한 홍보 실시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달성도	우수	•다양한 성과지표 설정하고 목표를 초과달성함 •지표달성률: ① 103.2%, ② 108.3%
2. 계획의 적절성	보통	•위해제품으로 문제된 제품들에 관하여 보도자료 배포 등 일반 소비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 할 필요
3. 시행과정의 적절성	우수	•소비자24 관련 지속적인 홍보로 상당한 인지도 개선
4. 정책효과성	보통	•해외위해상품에 대한 감시 및 차단 활동이 강화됨

23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1)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발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 소비자단체 대상 수요조사,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검토 등 실시
-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안건 발표(총 9건),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주기적 이행관리 실시
 - * 「소비자기본법」 §25② : 소비자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법령 등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 특히, 올해 9월 국무총리 주재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전 부처 협업으로 새 정부의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4대 전략 마련·보고

2)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 주요 결혼서비스업체들의 자율적 가격공개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지역별 결혼서비스업 가격에 관한 비교정보 공개
- 식품분야 용량폼수 관련 법정부 정보제공 체계 확립*
 - * 10개 주요 치킨 가맹점을 대상으로 치킨의 '조리 전 중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요 외식업종 사업자가 중량감측·가격인상을 자율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유도 등

3) 소비자정책 네트워크 강화

-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 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운영
- 제30회 소비자의 날(12.3.) 기념식을 개최하여 소비자 정책 성과 및 관련 기관간 주요 협력 사례를 소개하는 등 대국민 관심 제고
- 제10회 아시아 소비자정책 포럼을 서울에서 개최(9.11.)하여 각국의 소비자 정책 동향, 국제 전자상거래 분쟁, 인공지능 기술과 소비자 보호 등 논의

4) 표시광고법 분야 제도 개선

- 소비자안전 관련 중요 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 경제적 이해관계를 은폐·누락한 행위(SNS 뒷광고) 등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에 추가
- 결혼·건강관리 분야 소비자 합리적 선택 지원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중요 정보* 공개 의무화(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11월)
- * (결혼) 예식업 및 결혼준비대행업 세부 서비스 내용·요금, 계약해지 시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 (건강관리)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선납 이용료에 대한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

5) 표시광고법 분야 법 위반 예방 및 교육·홍보

- (AI·그린워싱) AI워싱 의심사례 모니터링 및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 위반·우수사례 중심으로 경제단체와 협업하여 교육 실시
- (SNS뒷광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숏폼 등에서 위반 의심 게시물 총 18,775건 자진시정 유도(~11.30. 누적)
- (AI 허위과장광고) ▲‘가상인물’ 표시 누락 시 기만적 광고로 규정, ▲AI 활용 광고 시 표시방법 규정 등 내용으로 관계부처 합동 대응책 발표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AI 가상 인간 광고 관련 규율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전국에 산재한 결혼서비스업자, 헬스장 등의 의무준수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방정부로 관련 권한 이양 방안 검토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달성도	미흡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함 •지표달성률: ① 103.2%, ② 108.3%
2. 계획의 적절성	미흡	•특이사항 없음
3. 시행과정의 적절성	보통	•소비자정책 분야의 정보를 제공·홍보함
4. 정책효과성	우수	•특히 결혼 서비스업 분야는 혼인율과 연결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소비자 시책이었음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1	○ 향후에도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 그 효과를 분석할 것을 권유	○ 향후에도 민생과 밀접한 사건처리, 규제 개선 등 사례에 대한 효과분석을 추진할 수 있도록 차년도 업무계획 수립 시 반영 추진('26.4분기)
2	○ 사전협의제도 관련 홍보 필요 ○ 미신고 일제 점검 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 고민 필요	○ 기업결합설명회(연1회)에 사전협의제도 관련 홍보 및 보도자료 배포(연1회) ○ 미신고 점검 시 금융감독원, 기업집단 포털시스템과 연계한 징후시스템 개발을 논의할 계획(2026년 하반기)
3	○ AI 산업 발달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유형의 기업 결합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분석하고 대비할 필요	○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예견되는 신유형 기업결합이 신고·심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기업결합의 신고요령 등)을 정비할 계획
4	○ 작년 일부 정책 추진 사항이 지연되거나 재논의되었는바, 올해는 더 많은 성과를 낼 필요	○ 2026년도에는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성과 창출을 확대할 계획임
5	○ 사건 난이도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심의 지원 조직의 확충 및 내실화 계속 추진	○ 심의 신속화 및 내실화를 위해 상임·비상임위원 증원 관련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추진할 계획('26년)
6	○ 최근의 소송 결과를 반영한 실질적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필요	○ 플랫폼 분야 최신 심결례 및 판례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합리적인 정책안 마련을 위한 논의 지속(상시)
7	○ 배달앱 분야 상생협력 등과 조화롭게 진행될 필요	○ 실질적인 상생방안 모색 및 신속한 사건 처리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배달앱 분야 거래관행 개선을 도모하겠음(연중)
8	○ 연구 결과 등에 대하여 영문화하고, 링크드인 등 SNS를 통한 홍보 활성화 권유	○ 연구결과보고서 영문판 발간('26.2월) ○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 SNS 홍보('26.2월)
9	○ BRIAS 정확성 등에 대한 홍보 필요 ○ 금융기관에 대한 카르텔 교육 고려 필요	○ 보도자료 배포 및 국제회의 참석 등 BRIAS 홍보를 확대할 계획(상시) ○ 카르텔 교육 담당부서(시감정책과)와 협의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카르텔 교육* 참석 권고(상시) * 카르텔 업무설명회 등
10	○ AI 등 IT 기술을 적극 도입해 업무 효율을 높일 필요	○ 시중 AI 프로그램 활용시 비공개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원회 자체 AI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될 필요

		- 공정위 자체 AI 구축 사업 등이 진행될 경우 적극 협조하겠음
11	○ 거래소 공시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공개 항목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작년에도 최대한 정보공개 항목들을 많이 발굴하였으나, 좀 더 발굴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음
12	○ 새로 추진 중인 여러 하도급 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하여 하위 법령,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제도개선 유형(법률, 시행령, 고시, 표준계약서 등)에 따라 가중치를 별도로 부여하는 등 평가지표를 실효성 있게 정비할 필요	○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등 추진 예정 ○ 26년 자체평가 기준 수립시 평가지표 정비 방안 검토 예정
13	○ 적극적인 법 집행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 및 인력 확대 필요	○(인력) 하도급 분야 증원('26.3월, 27명 → 58명) ○(예산) 27년도 예산 증액 요청하여, 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음
14	○ 새롭게 추진·도입하려는 제도들의 안착·운영·보완에 많은 지원이 이뤄질 필요	○ 하위법령 등 세부 제도 설계 시 업계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고, 제도 시행 전후로 업계 대상 홍보·교육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상시)
15	○ 제도 개선 과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현장과의 소통을 통하여 수용성을 높일 필요 ○ 추진 중인 제도개선 방안이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게 할 필요	○ 제도 개선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통 옴부즈만 회의 및 업계 간담회 등 소통 창구를 보다 활성화하여 정책의 현장 수용성을 높여 나갈 계획(상시) ○ 현재 추진 중인 유통분야 대금지급기한 단축 및 대리점 단체구성권 도입 등 주요 입법 과제들이 국회 통과를 거쳐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지원과 시행령 정비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26.4분기)
16	○ 필수품목 제도 안착을 위한 서면 점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 변경 여부 점검도 필요 ○ 조치 유형별 가중치를 반영한 시정조치 점수를 활용하여 고난도, 중대 사건 처리 노력이 반영되게 평가지표 설계 필요	○ '26년도 도소매·서비스 업종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 시 개선·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실시하겠음 ○ 안전상정 건 중 고난도·중대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점수를 상향하여 평가

17	○ CP 및 분쟁 조정 관련 향후 질적 수준을 제고할 필요	○ CP포럼 등을 통한 CP 현장의견 수렴, 분쟁조정법 제정 지원 및 찾아가는 분쟁 조정서비스 실시 확대 등을 통해 각 제도의 질적 수준 제고를 지원할 계획(상시)
18	○ C2C 거래 관련 새로 도입된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	○ C2C 거래 플랫폼이 새로 도입된 의무(개인판매자 신원확인,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시정명령, 과징금 등 제재조치가 부과됨 - '26.7월경부터 제도 시행 예정으로, 법 위반시 엄정 대처하도록 하겠음
19	○ 자율 규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악의적 다크패턴에 대해 조치 사례를 남길 필요	○ 악의적 다크패턴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상시)
20	○ 상조회사의 자금 운용, 기업 인수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팔로우업 필요 ○ 다수 발의되어 있는 할부거래법 개정안 관련, 최종 개정 작업에 힘쓸 필요	○ 상조업체들의 '25년 결산이 완료되는 대로 감사보고서를 통해 자금운용 현황 및 기업인수 관련 우려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음('26.4월) ○ 여·야 의원실, 정부위 행정실, 관계부처 등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음(상시)
21	○ 상조회사의 결합상품 판매를 지속적으로 규제함이 바람직	○ 상조회사의 결합상품 판매과정에서 거짓·과장, 유인 등 할부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 점검(상시)
22	○ 위해제품 관련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 할 필요	○ 소비자원 등을 통해 위해제품 차단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상시)
23	○ AI 가상 인간 광고 관련 합리적인 규율체계 마련 필요	○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AI 생성 여부 표시 의무 규정 및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마련할 계획('26.상반기) ○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범위를 AI 악용 광고로 확대하여 신속한 차단·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26.3월~12월)